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| 의 안 번 호 | 23-176 관련 |
|---|---|

발의년월일 : 2023. 11.
발 의 자 : 이상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제6조제1항제5호 조문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6조제1항제5호 중 “체육프로그램”을 “체육 프로그램”으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 중 “체육프로그램”을 “체육 프로그램”으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-|
| 제6조(건강증진 등)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 | 제6조(건강증진 등) ① ----------. | 제6조(건강증진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 |
| 5.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| 5.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| 5. ---------- 체육 프로그램 ---------- |
| 6.·7. (생 략) | 6.·7. (현행과 같음) | 6.·7. (개정안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| ② (개정안과 같음) |
|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| <삭 제> | (개정안과 같음) |